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9. 21.(수) 09:1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1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9월 6일에 있었던 제5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9월 12일에 있었던 제52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의결사항

###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53-19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이 가능해지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복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EBS에서 '15년 2월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방송법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14년 12월 23일 EBS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2월 11일 EBS2 MM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6년 1월 28일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영된 방송법 개정안을 '16년 5월 4일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6년 9월 5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가채널의 정의 및 승인근거 등 신설입니다. 다채널방송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여 법적지위를 신설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

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승인 대상은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범방송 결과 등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필요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채널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가채널 재승인 시 추가적인 심사항목으로 방송평가 결과,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규정하고, 부가채널 승인·재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 신설입니다.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부가채널이 공익적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에 대한 승인·재승인을 얻은 경우와 승인·재승인을 얻지 않고 부가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부가채널 편성내용과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안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다채널방송 부가채널로 명칭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명칭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3페이지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법 제9조의4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에 지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채널(이하 “부가채널”),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다채널방송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가채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EBS2는 부가채널이고 EBS1과 EBS2가 동시에 주파수 대역 안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채널방송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방송법에도 명시를 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허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부가채널이 채널의 후반부에 아마 90 몇 번대에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서 허가해 주는 것인데 이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시청이 용이한 앞 번호로 채널을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BS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EBS도 보다 좋은 번호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만 또 접근성도 용이해지고 시청률도 담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소관은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채널 몇 번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SO나 IPTV 사업자들 자율적으로 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좋은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계속 SO와 IPTV 사업자들에게 EBS2 채널의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시청자들이 보다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일종의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좋은 채널을 갖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시청자들에게 EBS2 채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채널이 좋은 내용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EBS2 채널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널번호 문제뿐만 아니라 EBS2 채널이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채널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도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올해는 EBS-2TV 시범 서비스 예산으로 20억원이 책정되었고 내년도에는 30억원 증액이 되어 50억원으로 기재부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예산 부분이 반영된 경우에 올해 3, 4% 정도의 신규 MMS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통해서 MMS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까 수렴했다고 하는데 대개 사업자들 의견이 어떤 식으로 모아졌습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대상 사업자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보면 방송협회라든지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는 도입 대상 사업자에 대한 법 규정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법 개정안을 보시면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방송이라든지 시청자 권익 증진이라든지 지상파 전체에 확대될 수 있는 문구를 좀 더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자의 경우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있듯이 지금 EBS의 다채널방송은 작년 2월부터 1년 이상 시범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그 성과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입 취지 자체가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확대, 특히 사교육비 절감 등 방송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EBS2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견수렴결과를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있지요. 법에 의

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의무재송신 관련된 조항은 현행 법규에 보시면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재송신 채널에 대한 정책적 소관은 미래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법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IPTV 재송신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가까이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95번 동일한 채널로 3개사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법에 머스트캐리(Must Carry)가 KBS1과 EBS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규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상파채널 중에서 어떤 채널을 재송신 하는지 여부는 미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언제 바뀌었습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법에 규정 제78조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78조제2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다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다채널방송을 도입한 취지가 최대한 달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보면 이런 법안들은 특히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은 하게 되지요? 정기국회 마지막 정도에 제출이 됩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11월 정도 되면, 빠르면 연말 정도 논의가 되고, 이것이 새삼스럽게 처음 제기된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기국회, 아니면 그 후속으로 내년 초라도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방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미래부와 협의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법안 작업과 더불어서 실무적으로는 준비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채널방송을 시범서비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의결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경우에 부가채널을 허용해 줄 것인지, 승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 놓았고,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EBS2 교육방송의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을 앞에 예시로 한 것이고,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질문 오가는 중에 조금 팩트가 달라서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 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가 소위 말해서 다채널방송을 할 경우에는 그중에 어느 채널을 의무재전송을 다 할지, 일부만 할지 그것은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채널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다채널 중에서 머스트캐리(Must Carry)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채널에 대해서 미래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것은 몇 조 몇 항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7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는, 지금 EBS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EBS1, EBS2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다채널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EBS가 운용하고 있는 교육방송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료방송에 가고 있는, 그것을 전제합니까?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 것이 2013년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때 MMS와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꼭 MMS라기보다는 제2항의 문구를 보시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개의 채널’이라는 개념을 KBS1, KBS2 이와 같이 아예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채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EBS 채널 처럼 1개의 주파수 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법을 만들 때는 MMS를 전제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해석을 그대로 하면 사실은 MMS에 대해서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EBS 두 번째 채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미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EBS2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매우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IPTV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에는 동시 재송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케이블의 경우에는 동시 재송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디지털 케이블에 동시재송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른 조건 관계 때문이 아니고 채널번호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그런 측면도 있고 SO 입장에서 채널 변경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 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상황을 보고 하면 채널 변경 부분도 협의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은 채널번호로 해서 SO도 동시 재송신할 의향이 있다?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53-19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추진경과 중에 지난 3월 31일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규제위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4쪽에 위원회 보고드린 이후에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 제한 금지’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만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당한 서비스 접근제한 금지’ 관련해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당한 정보 오인광고 금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정보를 가리는 부당광고 금지’ 관련해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금지’ 관련해서는 규제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변경된 수정안은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4>번 주요내용 1. 이용자 이익 강화, 그리고 괄호 열고 안 [별표 4] 다음에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이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 특히 이용자정책국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제도와 관련해서 고시도 개정하고 시행령도 개정하면서 많은 제도 보완

노력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주 의미 있는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이 들어가서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고시든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제4항도 시행령 개정 이후에 고시를 후속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 고시 개정까지 조속히 마무리한 이후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법령 업데이트된 내용을 잘 정비 내지 정리 내지는 해설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방통위 특히 이용자정책국 내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등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준비단계라고 한다면 집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실무적인 이야기 같지만 법령을 개정하는 담당자들과 실제로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직원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말씀은 작년에 고시 개정한 내용과 이번에 또 시행령 개정하고 또 고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시행에 이제는 주력해야, 이 취지대로 통신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지는 위반한 경우에 시정, 제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금지행위 제도의 의미가 사는 것이니까, 저는 시행 준비 내지는 실행,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 내에서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고 이미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과별로 업무분담도 준비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 조사관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관련된 업계에도 개정된 내용을 잘 설명해서 사전적으로 그러한 금지행위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되는 내용 중 저희가 후속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 5호 사. 괄호 4번 고시를 제정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고시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업계, 또 소비자들, 각종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

건을 잘 수렴해서 실효성이 있으면서 또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개정 규정의 내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붙임>에 보면 전부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5호 사. 팔호 4는 고시 제정 때문에 시행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지금 법제처 심사….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법제처와 협의를 해서 한 호만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포 절차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팔호 3이나 팔호 5, 6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와 관련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것이 공포되어서 시행되면 바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통신시장에 대한 정책 내지 규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미래부와 방통위를 구분한다면 방통위의 경우에 시행령, 지금 별표에 있는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통위의 법적 근거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통신시장 사후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일을 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업데이트 내용 정리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과 업계에 잘 설명을 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점검이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개정된 내용이 바로..., 물론 어떤 혐의가 있어야 조사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 조사관들이 실제로 법규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제라도 조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처음 도입된 유형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있어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야말로 일제히 실태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잘못이 있을 것 같다,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너무 뒤로 늦추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가 아주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지적되고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는데 제도화하는 데 그동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봐서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시행령 개정작업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실제 집행까지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면 저는 우리가 그동안 해 온 노력이 의미를 많이 상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실제 집행을 위해서 마지막 스퍼트(sprint)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이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규개위나 공정위, 문화부 입장에서 보면 소관하고 있는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 기관들로서는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위에 있는 4개 정도는 이용자 권익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 제한’, ‘부당한 서비스 접근제한’, ‘부당한 정보 오인광고’, ‘정보를 가리는 부당광고’, 이런 것들이 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표현도 바뀌고, 특히 ‘정보를 가리는 부당광고’ 같은 경우에는 금지였다가 삭제를 제한하는 것만 여기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준비시간이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이러한 유관기관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던 취지들이 약간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목표와 이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용이 바뀔으로써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용자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는 사실 국내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스마트폰과 외국산 스마트폰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부당한 정보 오인광고’도 마찬가지지요. ‘정보를 가리는 부당광고’도 사실은 이용자

들이 대단히 큰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내용들이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당 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법안 시행령의 경우에는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평가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100% 입법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실무자들 포함해서 사무처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얻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문구는 수정을 하였습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훼손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다시 그런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4페이지 ‘부당한 서비스 접근제한 금지’인데, 이것이 휴대폰 앱 설치에 관련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앱은 그 위에 있는 ‘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 제한 금지’

○ 김재홍 부위원장

- ‘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 제한 금지’에 관련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선택제 앱의 설치와 삭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통과가 됐는지, 보류됐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 사업자들이 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최근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통과됐는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전동의….

○ 김재홍 부위원장

- 이용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앱을 설치하는 일들이 많아서 설치해 놓으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도 있어서 그것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고요? 부당한 앱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비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되 그 삭제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용자에 따라서 필수인지 비필수인지는 다를 것입니다. 서비스니까,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을 묻지도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냥 설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다 하고 의원입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삭제를 못 하게 제한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또 금지이고, 그러면 취지는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삭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래에 보면 여기에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아래는 또 부당한 서비스 접근 제한하자, 부당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앱인데 부당한지 안 한지는 이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앱을 멋대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앱은 이 두 번째에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앱은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자유롭게 삭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자기가 삭제할 수 있도록….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본인들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 측에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 부분은….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일단 각 개인들이, 이용자들이 알아서 삭제하자는 취지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나 일부 앱들은 삭제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기술적으로 잘 안 되게 해 놓은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불법이지요. 남의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설치해 놓고 그 이용자가 필요 없을 때 지우지도 못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규제의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정말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5호 사. 팔호 3은 소위 선택재 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용자가 삭제를 할 수도 없게 해 놓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폰이라든지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앱들을 다 이용해 보셨겠지만 쪽 그냥 의무적으로 미리 선택재 해서 출시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삭제조차도 안 되도록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지행위로 저희가 사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사후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알아서 거기에서는 필수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적절하게 소비자들을 위해 편리하게 대응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앱에서 마켓에 있는 앱을 다운받을 때 다양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접근권한을 주기가 싫은데 만약에 그 접근권한을 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이미 올해 3월 23일로 기억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서 선택적인 접근권한과 필수적인 접근권한을 구분해서 선택적인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시행시기가 1년 뒤여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2가지가 서로 같이 기능하게 되면 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정안에 '부당하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에 삭제를 제한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 새로운 별도의 요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팔호 3,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지금 자꾸 이야기되는 출시 전에, 이용자가 가입해서 개통해서 쓰기 전에 탑재되어 있는 앱을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콜고루 다 있습니다. 이통사, 제조사, 그다음에 OS사업자 크게 보면 3가지의 사업자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그 세 개 중에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다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제조사인 경우에도 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제조업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신고를 합니다. 미래부에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도 일부...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사람들이 다 신고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저희들이 일부 사업자도 확인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두 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자꾸 설명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이용자들은 제조업체가 만든 것까지도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실제 실행과정에서 그것을 클

리어….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은 제조사까지 적용대상으로 염두에 뒀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라는 용어에 대해서 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업계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그냥 제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금지행위라는 그 자체가 ‘부당하게’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계속 있고, 일반경쟁법에도 그렇게 위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로서는 ‘부당하게’ 그러면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가 있든 없든 우리 조사관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당하게’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5호 사. 괄호 5의 경우에는 괄호로 ‘다만’ 해서 제외하는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표시광고법에 따른 거짓·과장광고, 기만광고는 표시광고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짓광고나 기만광고의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 취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집행해 나가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불편해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53-19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행정예고된 이후에 변경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의결주문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지난 8월 11일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후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이에 따라서 보고된 내용과 변경된 내

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를 거쳐 9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16-53-20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 이미 행정예고할 때 다 보고가 됐던 내용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예고기간에도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스마트기기와 융·복합 서비스가 증가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의해 개

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첫째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둘째로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망법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개선도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수집·이용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수탁자'와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를 하면 동의 없이 처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현행 망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유상판매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행 망법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동의 철회권만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이를 확대해서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행 망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형벌과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만 형벌과 행정제재 병과를 규정하되,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현행 망법은 국외이전 사전동의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현실적으로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첫째 법률 및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셋째 국외이전받는 자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한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므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망법을 위반해서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 개정이유가 고삼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이용자보호국에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요 개정내용에 제1항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그리고 또 제3항 ‘처리위탁 절차 개선’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9가지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요내용에서 인용하는 것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 개정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고, 국내법 체계와의 정합성,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 개정이유에서 한 마디 딱 하면 됐지 구체적인 내용에서까지 계속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화, 합리성 제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제4항 ‘유상으로 제3자 제공 시 고지 의무화’도 그렇고, 제5항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항을 보면 재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것도 저는 국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9항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및 벌칙 규정 신설’, 이것도 다 강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합리화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2항 ‘서비스 개선은 동일한 수집·이용 목적으로 규정’을 해서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으로 본다,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합리화라고 생각하고 처리위탁 절차 개선도 그렇습니다. 또 제6항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이원화해서 합리화하는 것도 저는 다 합리화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콘셉트를 가지고 앞으로 협의를 하든가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우선 주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이런 말들은 별로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4항 ‘유상으로 제3자 제공 시 고지 의무화’가 안 제24조의2제1항,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말을 다듬자고 했는데 이것이 별첨의 어디입니까? 제가 안 제24조의2제1항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던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처음에 어떤 부분….

○ 이기주 상임위원

-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

○ 최성준 위원장

- 그 뒤에 일부개정안에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안 제24조의2

제1항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마 제5호가 추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수정하면서 이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회의에서 랜덤하게 체크해 보면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죄송합니다. 그 조항 제1항에 제5호를 추가해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 추가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광범하게 고치는 것인데 정비한다고 할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예외사유를 많이 추가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일단 2가지 정도 추가를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국외이전 사전동의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풀어준 것인데 우선 그 전에 총론적으로 저는 이른바 망법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망법,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뒤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보통 일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상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명예보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주로 오프라인 부분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요. 우리도 일부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 관장부서는 아마도 행정자치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영향력, 확산 속도, 광역성, 또 기록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는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이 두 법을 일치시켜야 하느냐 하는 데 의문을 갖습니다. 망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장,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비추어서 너무 좁다, 너무 규제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법체계에서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달라야 하고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기본법 성격이 있는 법은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특성이 있는 법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유지하고 계속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한다, 그래서 사전동의 예외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 법률과 제도만 글로벌 스탠더드 하면 됩니까? 기업윤리나 기업문화나 또는 국민의식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문화나 의식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자? 저는 이것은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앞서 가 있는 인터넷 강국이지요. 그것은 유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국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썼지만 ‘이상한 인터넷 강국’, 왜? 온라인, 인터넷상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그래서 개인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없는 나라, 유럽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엄격하게 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법제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법제를 강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발전시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외이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사항을 많이 뒤서 울타리라고 할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국외에 있는 인터넷정보사업 업체,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 해외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행정력과 인력이 있습니까? 작년인가 한번 구글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던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구글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것을 폐기하는 쇼를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제대로 행정력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해외업체에까지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개방적으로



할 수 있게 넓혀 주는 것이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보고하고 입법예고 할 텐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점검과 의견제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나 전문가,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에게 권유해서라도 여러 분들이 잘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을지, 부작용이 없을지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십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이전의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3가지인데 그중에 법률 혹은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국외이전 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동의 없이 국외 처리·위탁·보관이 가능했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새로이 3개가 신설되는 것 중 제2호는 종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제1호는 법률에 의해서 국제협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제3호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APEC의 CBPR 같은 것, 그것은 각 나라가 서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아서 상호 간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상하고 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APEC 가입국의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개정안이 마치 국외이전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무슨 제한을 많이 풀어준 것 같은 규정은 아

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제 22조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2가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은 기존에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가 법에 있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에는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서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위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또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피해자의 경우라든지 또는 메르스 같은 확산이 잘 되는 질병의 경우를 예상해서 둔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 보면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상 새로 신설한 것은 그것뿐이고, 제1호 부분은 표현을 보완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늘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표현을 일치시키고, 긴급한 생명, 신체 침해의 경우에 예외적인 것을 하나 넣고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

각이고, 혹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것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오프라인의 경우와 온라인의 경우에 그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냐는 기본적으로 그다음 이야기이고, 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다,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들어간 시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기 이전 상황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이 유일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것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이고 이런 말을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정부의 노력이 터닝포인트가 몇 번 있는데 몇 년 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다른 법들의 정합성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서로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출발은..., 제가 두 분께 한 번 여쭙 보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다, 어디 소관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본적으로는 백화점 자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과거 관련부처 간에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정리해 온 것이지만 저는 섹터별로 담당이라고 해서 금융은 금융위, 정보통신 분야는 방통위, 교육 분야는 교육부, 보건 의료 분야는 복지부,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가 됐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되어서 내지는 개인정보 관련된 법 적용은 정보통신망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법제명이 우리 정보통신망법이 오래 전에 제정·시행된 이후에 뒤늦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름이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된 측면도 크지만 분명히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일어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는데 백화점이 요즘은 상점에서 물건 파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많고, 예를 들면 어느 백화점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면 저는 두 분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통은 산업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제가 아까 네 가지로 저 나름대로 내용을 보고 그루핑(Grouping)을 해 봤는데,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법이면서 또 최초의 법이고 일반법화 되어 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법제가 바뀌고 국내 실상, 현실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차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다든가 사전동의를 예외를 두고 확대한다, 저는 이렇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굳이 합리화, 명확화, 법체계 정합성, 글로벌 스탠더드화, 오히려 저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정보보호 제도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는 것이 80~90%가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처음에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면서 많은 전문가, 일반 국민 내지는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히스토리와 백그라운드에 대한 입장정리, 무장을 잘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협의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7항 국외이전 사전동의 예외 사유 추가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률 및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꼭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라도….

○ 김재홍 부위원장

- 국제협정이 논의해야할 부분인데 국제협정은 우리도 물론 국제조약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국제협정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른다라든가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든가 이것이 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면서 국제협정에 이러이런 규정이 있으면 정보 주권을 무시하고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대폭적인 완화입니다. 그다음에 제3호를 보면 국외이전을 받는 자가 방통위의 인증을 받는,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입니다. 우리가 직접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어디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증하는 것 아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떤 인증기관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만약에 국제협정하시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 김재홍 부위원장

- 동일한 효력인데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집행을 위한 절차 같은 것은 따로 차이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정법이 있고 구체적인 시행령은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실정법, 문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리고 국제협정이라는 것은 국내법처럼 구속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협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한 당사자로 참여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가입해서 하는 것인데...

○ 최성준 위원장

- 우리나라가 국회 동의를 필요하면 동의까지 받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국내법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지키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 의무는 있지만 형사처벌 하겠습니까, 과징금을 물리겠습니까? 물론 형사 조약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국제협정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 어떤 인증기관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3호와 관련해서는 각 개별국가가 국가별로 인증체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에 구글을 예로 든다면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 하에서 인증받은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APEC CBPR와 같은 국제간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경우에 저희들이 상호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증받는 대기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데가 있지만 그런 업체도 문제를 일으켜서 유럽 스페인 같은 나라에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을 통해서 스페인의 곤잘레스 케이스에서는, 이겨서 겨우 개인정보보호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시작했다가 지금은 유럽 각국들도 자기 나라의 정보 주권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되어 있는 법제를 지금 완화하고 풀어줄 단계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고지하고 일반에 공개하면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본인에게 고지는 하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리고 일반공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나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그냥 한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사후 처리...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적극적 보호냐, 수동적·소극적 보호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하에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을 관청에 신고해라, 신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시다. 말하자면 적극적 재산권이냐, 소극적·수동적 재산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알려주고 본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지요. '의견을 제기하면 우리가 알겠고, 안 하면 그대로 갈게' 이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냥 공시하고 알려만 주고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가버린다 하는 것은 많은 서민들에게는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까, 하여튼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후의 피해와 '이것 그런 거였어? 그런 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동의하겠느냐?' 물어봐도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동의 절차를 없애면서 그냥 본인에게 알려줬다, 공개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전동의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조금 설명드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알렸을 때 사전동의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및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방침에 국외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그 체결 및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동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두지 않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정보 이전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페이지의 제3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절차 개선입니다. 수탁자와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면 동의 없이 처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개선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괜찮냐는 것입니다. 대폭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또 국민들의 의식, 기업윤리 이런 것들이 과연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완화하고 약화시켜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저는 큰 방향에서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할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원칙과 예외 형태로 방법은 되어 있는데 그 예외에 의해서 지금은 대부분 동의없이 처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위탁

이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미 그 규정은 동의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사전동의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할 상황이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제에 반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가능하면 철저히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쪽의 극단에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은 가능하면 그런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또 한쪽 극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은 지금 여러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동의 만능주의가 되어서, 동의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워낙 많은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다 일일이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동의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전체를 선택해서 다 동의한다든지 이런 폐해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것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폐해가 당연히 더 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 극단에 어디를 갈 수가 없고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지대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 중간지대로서 아까 정리가 된 것처럼 세계적인 여러 입법례와도 기준을 같이 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여러 가지 정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안대로 입법예고를 해서 학계라든지 또는 이용자,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다시 한 번 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또 너무 과한 부분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논의를 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확정짓는 절차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시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과 과원들이 적절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0여회 이상 학자와 개인정보 전문가들 간의 연구반을 구성해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것이 또 그렇게 전혀 근거 없이 막 나온 법안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나중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 간 약간의 의견차이가 1차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은 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정되는 조항별로 의견수렴 결과 찬성하는 쪽은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하는지도 잘 적시하고 EU 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정보 관련된 제도 중 불능인 제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떤지 딱 위원님들이 종합토론을 할 수 있게 레퍼런스 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찬성이고 반대고 의견도 잘 정리하면 나중에 저희가 결론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는 제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봐도 한 가지로 설명하기 아주 어렵게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은 범위가 확실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법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련부처들과 협의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일단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시장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그다음에 EU 등 글로벌 스탠

더드에 맞게 개선을 해서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개인 위치정보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신고제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 창조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둘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권만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주체뿐만 아니라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의무, 손해배상책임, 재위탁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전동의를 통해서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이전받는 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통위가 중단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실수나 무지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이용·제공한 경우에 형벌을 적용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내용은 주요개정 내용 중 1번, 2번 진입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아까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과 취지나 이런 배경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정보통신망법 나중에 입법예고한 이후에 그것과 같이 이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종합토론해

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이유 두 번째 동그라미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를 같이 인용했는데 그 부분 위당을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앞에 보고안건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그 부분은 없애는 것에 대해서 다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문구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입법예고를 거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입법예고 동안에 의견을 주실 분들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서의 우리의 토론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치정보야말로 사생활 침해가 많은 것이고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 사전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시행령으로 또 구체화시키겠지만, 개인정보, 위치정보라고 하는 것은 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느냐? 사생활 침해가 꼭 우려되어야 사전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는 진입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 말고 <3>번 사물위치정보 동의제도 합리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생활 침해가 되든 안 되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생활 침해, 이익침해가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은 정보주권이 아니지요. 개인정보, 위치정보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동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디지털 정책은 산업진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그냥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도 터졌습니다. 지금은 다듬어야 할 때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풀어주고 완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보다 더 그렇고, 위치정보에 기반한 산업의 기업들, 지금까지는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큰 기업들에게 신고제로 낮춰주고 작은 업체들에게는 또 생략해 주는 것인데….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한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지요. 사물위치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개념적으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와는 전혀 무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Io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도 적용되는 것 중에 범인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 김재홍 부위원장

- 공용차량….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것을 사물위치정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과 분리된 사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휴대폰, 자동차, 시계, 의류, 이것이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특정 개인하고 사실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는 개인위치정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일종의 결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물위치정보가 아닙니다. 사물위치정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특정 개인과는 분리가 되어서 특정 개인의 위치는 알 수 없는....

○ 최성준 위원장

- 개인하고 분리가 됐거나 또는 그 사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법에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 파악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물이지 않습니까? 자연인의 육신을 가지고 위치를 파악합니까?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을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념, 정의조항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가르마를 탑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물위치정보라는 것은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 즉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 이것은 사물에 관한 정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개념이며, 이렇게 정의조항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지금 전부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경우에는 상호나 소재지만 우리에게 보고하면 별도로 신고서라는 명칭을 써서 첨부서류로 해서 내는 절차는 간소화해 주겠다,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보고는 받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예를 들면 전에 우버택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년에 말썽이 있었던 우버,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도 국내법 절차에 따른 신고조차 하지 않고 하다가 말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버택시….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우버는 지금 신고한 상태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뒤에 신고를 받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래서 여기도 1인 창조기업….

○ **최성준 위원장**

- 오해가 있는데 우버가 하는 영업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카카오택시와 똑같이 하는 영업을 있고, 그렇지 않고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영업을 있는데 일반 자동차를 사용해서 하는 영업은 저희가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신고를 사실상 거부해서 그것은 신고가 안 되어 있고, 카카오택시처럼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영업은 저희가 신고를 수리한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신고하기 전에 영업을 했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영업 자체는 시작을 안 했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영업을 하다가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 언론에 보도되어서 물의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남의 나라에 와서 영업하면서 그 나라의 실정법 절차를 밟지 않고 하니까 이 나라가 과연 정보주권이 있는 나라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신고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징벌적으로….

○ 최성준 위원장

- 우리나라에서 일반차량을 이용한 영업은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영업택시인지, 서울시택시조합에서 신고를 해서 문제가 시작했을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고 국토부의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영업을 못 하다가 결국은 관련 법령을 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또 하나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신고절차도 밟지 않았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것들을 다 이행한 다음에 영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여기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허가제, 신고제 이렇게….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 원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서류를 만들고 그러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상호와 소재지만 우리에게 보고해 주면 굳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런 절차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우버가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완화시키기 전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되고 발전되어 가는 상황이 결코 아닌데 완화시켜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든다면 우버가 사업계획서를 못 쓸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완화하려는 부분은 1인, 또는 소상인 같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준비, 제출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해소해 주되,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결국 관리·감독은 계속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좋고,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적인 절차, 신고절차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완화시켜 줌으로써 생기는 문제,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완화는 없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설령 신고 간소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신고 간소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 지난번 우버와 같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합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예외적으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완화 아닙니까? 지금까지 규제하고 제한하던 것을 너무 제한이 심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이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도 풀어주자, 이것은 완화지요. 완화인데 우리의 기업윤리와 문화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른 나라 예를 비교하려면 그 나라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기업윤리와 국민의식, 문화까지도 함께 비교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 최성준 위원장

-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이해를 통해서 각 조문별로 업계, 학계, 단체 의견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하고 외국의 입법례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 그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으로서 첫 번째로는 현재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3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두 번째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양수·합병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 시 사업계획서 전체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된 사항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결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앞부분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것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사전에 몇 번 보고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전 심결하기 전 주에 보통 티타임을 하고 티타임을 하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무처장이 계시니까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사안들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판단되실 것이고 국장님 판단되실 것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보고사항이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 아쉬움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안, 틀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2005년 이후에 처음 대대적으로 개정안을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께 딱 한번 보고하고 티타임에 올리고, 전체회의에 올려서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까? 사전 조율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처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 꼭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별표1)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별표2)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미디어랩 6개사 영업보고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3>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OBACO에는 12.3205%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는 9.1071%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2)에서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총 지상과 광고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매년 또 우리가 해 오던 작업이고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타 안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무처장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사무처장 직제가 없었는데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물론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필요한 경우 사무처 조직을 대표해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국간의 효율적인 유기적 업무조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제 위원회로서 우리 방통위의 심결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으로 처음 전체회의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소감을 듣는 것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전체회의와는 무관하지만 말씀하시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름대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까지 기타 안건 이야기한 것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보다도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일을 수행하시는데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오늘도 지적해 주셨습시다만 각 국마다 마련하고 있는 안건을 사전에 조정도 하고 또 각 국간 협업을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밖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전달하고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5분 폐회 】